

특별징수로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

## 안분계산은 이렇게!!

• 총부담세액 > 기납부세액 :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

사례 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4,000원, 본점 A시(70%), 지점 B시(30%), 특별징수지 C시

총부담세액		기납부세액		각 사업장에 안분신고 → 차감납부세액 (안분신고납부)	특별징수 세액은 납세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
4,000원	A(본점) (70%)	B(지점) (30%)			
6,000원					

  

구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 C
	A(70%)	B(30%)	
총 부담세액	10,000원		징수세액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4,000원
기납부세액	4,000원		
	총액		
	안분	2,800원	1,200원
차감납부할세액	4,200원	1,800원	

• 총부담세액 < 기납부세액 :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, 초과한 금액은 본점 가산

사례 총부담세액 10,000원, 특별징수세액 31,000원, 본점 A시(70%), 지점 B시(30%), 특별징수지 C시

총부담세액		기납부세액		납세자의 총부담세액 만큼만 특별징수세액을 안분하여 각 사업장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
10,000원	A(본점) (70%)	B(지점) (30%)		
	21,000원			환급대상액 (본점 일괄 환급)

구분	사업장		특별징수지 C
	A(70%)	B(30%)	
총 부담세액	10,000원		징수세액
안분세액	7,000원	3,000원	31,000원
기납부세액	총액	31,000원	
	안분대상액	10,000원 (총부담세액)	
	안분	7,000원	3,000원
	본점가산 (=환급)	21,000원 (31,000원-10,000원)	
소계	28,000원	3,000원	
차감납부할세액	-21,000	0	

법인지방소득세

## 신고·납부 시 꼭! 챙겨야 할 사항



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
- ☑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,
- ☑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,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

• 신고서 제출서류 목록

분류	종류	서식 (지방세법 시행규칙)	
신고서	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	별지 43호	
	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별지 43호의2	
	안분명세서	별지 44호의6	
	공제(감면)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	별지 43호의3	
	가산세액 계산서	별지 43호의4	
첨부서류	특별징수세액명세서	별지 43호의5	
	재무상태표		
	포괄손익계산서		
	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		
	현금흐름표 →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		
	소급공제 환급신청서 → 해당 법인만	별지 43호의9	

•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·납부

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

$$\left( 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}}{\text{법인의 총 종업원수}} + \frac{\text{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}}{\text{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}} \right) \div 2$$

※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

•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은 없음

법인세를 공제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. 다만,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(0.9%, 1.2%)

※ 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 사항 참고



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-2100-3399 경상남도 055-211-3725

12월말  
결산법인의  
'19년 귀속  
법인소득



#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







## 법인지방소득세란?

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

### · 과세대상 법인소득

각 사업연도 소득, 토지 등 양도소득, 미환류소득, 청산소득

### · 신고·납부기한

구분	신고·납부기한
내국법인	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<b>지방세법 제103조의23</b>
연결법인	연결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이내 <b>지방세법 제103조의37</b>
수정신고	법인세 수정신고와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<b>지방세법 제103조의24</b>

## 우리도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



### 지원대상

확진환자·격리자·방문 사업장, 기타 직·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

### 지원내용

**납부기한 연장**

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(최대 1년)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, 신고서는 5.4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은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입니다.



### 신청방법

관할시·군 세무부서에 우편·팩스를 통해 신청

### 문의사항

관할시·군 세무부서

### 시군별 안내전화

담당부서	전화번호	팩스
창원시 의창구 세무과	055-212-4241	055-225-4832
창원시 성산구 세무과	055-272-4241	055-225-4862
창원시 마산합포구 세무과	055-220-4251	055-225-4892
창원시 마산회원구 세무과	055-230-4241	055-225-4922
창원시 진해구 세무과	055-548-4241	055-225-4952
진주시 세무과	055-749-8199	055-749-5258
통영시 세무과	055-650-4362	055-650-4399
사천시 세무과	055-831-2890	055-831-6099
김해시 세무과	055-330-4628	055-330-3489
밀양시 세무과	055-359-5128	055-359-5733
거제시 세무과	055-639-3434	055-639-3459
양산시 세무과	055-392-3172	055-392-2208
의령군 재무과	055-570-2304	055-570-2309
함안군 세무회계과	055-580-2093	055-580-2149
창녕군 재무과	055-530-1283	055-530-1270
고성군 재무과	055-670-2167	055-670-2259
남해군 재무과	055-860-3175	055-860-3705
하동군 재정관리과	055-880-2275	055-880-2279
산청군 재무과	055-970-6204	055-970-6209
함양군 재무과	055-960-4422	055-960-5713
거창군 재무과	055-940-3232	055-940-8907
합천군 재무과	055-930-3123	055-930-3129

## 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### · 과세표준 및 세율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2억원 이하	1%	-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%	200만원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.2%	4,200만원
3천억원 초과	2.5%	9억 4,200만원

### ·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

